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

라미령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mrara@kiep.go.kr, Tel: 044-414-1054)

김제국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jegook@kiep.go.kr, Tel: 044-414-1039)

## 차 례

1. 머리말
2. RCEP의 추진 현황
3. 분야별 주요 쟁점
4. 주요국의 입장
5.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주요 내용

- ▶ 2017년 1월 30일 미국이 공식적으로 TPP에서 탈퇴함에 따라 TPP 발효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아태 지역의 주요 Mega-FTA인 RCE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인도, 한국, 호주, 뉴질랜드 6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2012년 11월 협상개시 선언 이후 총 16차 협상이 진행되었음.
  - 미국을 포함한 TPP 발효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동아시아 역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16개 참여국간 RCEP 협상을 신속히 마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RCEP은 참여국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뚜렷한 주도 국가가 없어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으며, 15차 협상에서 경제·기술 협력, 16차 협상에서 중소기업 부문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상품·서비스·투자 자유화 등 주요 분야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상품서비스투자 시장접근 관련 협상국간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두 차례 타결 목표시한이 연기된 이후 협상참여국들은 공식적인 타결시한을 선언하지 않고 있음.
  - 협상 참여국들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RCEP의 조속한 타결을 달성해야 한다는 공동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개방 달성을 목표로 할 경우 참여국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RCEP은 단순히 역내 기체결 FTA를 단일 텍스트로 통합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며, 회원국들은 RCEP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역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한국은 RCEP의 조속한 타결 및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인 협정을 도출하기 위해 여타 참여국의 입장을 수용하고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절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RCEP 타결이 역내 가치사슬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아시아·태평양 역내 무역의존도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 및 분석이 필요하며, 변화된 GVC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유연한 대응방안이 요구됨.

## 1. 머리말

■ 2017년 1월 30일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함에 따라 TPP 발효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RCEP은 2015년 TPP 타결 이후 협상의 동력을 다소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트럼프 당선 이후 아태지역 주요 Mega-FTA로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음.
- 향후 RCEP 참여국 중 TPP 회원국인 7개국<sup>1)</sup>의 입장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인도, 한국, 호주, 뉴질랜드 6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TPP와 함께 미·중, 중·일 간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도권 확보 경쟁과 연계되어 진행되어 왔음.

- 중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아세안에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ASEAN+3 형태의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EAFTA)을 제안하였으며(2004년), 일본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ASEAN+3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ASEAN+6 형태의 동아시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EA)을 제안함(2006년).
- EAFTA와 CEPEA 사이에서 중·일 간 갈등이 지속되며 동아시아 지역통합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TPP를 추진함.
- 아세안이 역내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ASEAN+6 체제인 RCEP을 제안하였으며(2011년), 중국은 TPP에 대응할 만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필요성을 느껴 RCEP 출범에 협력하였음.

■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TPP 발효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동아시아 역내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RCEP의 추진현황과 전망 및 시사점을 점검하는 작업이 요구됨.

- 본고는 협상진전 내용과 함께 기체결 FTA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전략, RCEP 협상의 타결 가능성 및 효과, 시사점 등을 살펴보고자 함.

## 2. RCEP의 추진 현황

### 가. RCEP의 개요

■ RCEP이 체결될 경우 세계 인구의 약 48%, GDP의 약 31%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형성됨(표 1 참고).

1)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표 1. RCEP의 경제적 위상

(단위: %)

| 경제권    | 인구   | GDP  | 수출   | 수입   | FDI(순유입) |
|--------|------|------|------|------|----------|
| ASEAN  | 8.6  | 3.3  | 6.9  | 6.5  | 6.0      |
| RCEP   | 47.9 | 30.5 | 28.3 | 26.6 | 21.6     |
| NAFTA  | 6.6  | 28.1 | 14.8 | 18.0 | 21.6     |
| TPP    | 11.1 | 37.3 | 24.6 | 27.9 | 28.7     |
| EU(28) | 6.9  | 22.1 | 33.6 | 31.8 | 25.6     |

주: 2015년 기준. 단, 뉴질랜드의 수출·수입은 2014년 기준.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검색일: 2016. 12. 23).

- RCEP 참여국과 한국의 교역 규모는 한국 총 교역의 51.7%, 수출은 55.8%, 수입은 46.8%를 차지함.

■ 중국, 일본, 인도, 한국, 호주, 뉴질랜드 6개 국가는 이미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바 있으며, 해당 기체결 무역협정을 ‘ASEAN+1 FTA’라 지칭함.

-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ACFTA), 아세안·한국 자유무역협정(AKFTA), 아세안·일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AJCEP), 아세안·인도 자유무역협정(AIFTA),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ANZFTA)이 발효 중임.

표 2. 기체결 ASEAN+1 FTA 개요

| ASEAN+1 FTA | 발효연도                                            | 특이사항 및 협상개선 현황                                                                                                                                        |
|-------------|-------------------------------------------------|-------------------------------------------------------------------------------------------------------------------------------------------------------|
| ACFTA       | 2005년 7월(상품),<br>2007년 7월(서비스),<br>2009년 8월(투자) | - 지적재산권과 STRACAP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2009년 12월 서명<br>- 무역원활화(TBT, SPS) 조항을 포함한 개정의정서를 2013년 1월 발효<br>- 경제협력 관련 개정의정서에 2015년 서명                              |
| AKFTA       | 2007년 6월(상품),<br>2009년 5월(서비스),<br>2009년 9월(투자) | - 개정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2차 의정서를 2011년 11월 서명<br>- 전자발급 원산지 증명서 인정, 무역원활화 규정 등을 포함한 상품협정문 개정의정서에 2015년 11월 서명<br>- 투자협정의 유보목록에 대한 논의를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완료하기로 합의 |
| AJCEP       | 2008년 12월(상품)                                   | - 서비스 및 투자 분야는 빌트인 어젠다 <sup>2)</sup> 로 설정, 현재 협상 중<br>- 아세안 7개국과 맺은 EPA에 서비스 및 투자 분야가 포함되어 있음. <sup>3)</sup>                                          |
| AIFTA       | 2010년 1월(상품),<br>2015년 7월(서비스),<br>2015년 7월(투자) | - 무역원활화 조항을 포함한 개정의정서를 2013년 1월 발효<br>- 투자협정의 유보목록에 대한 논의를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하기로 합의                                                                     |
| AANZFTA     | 2010년 1월(상품,<br>서비스, 투자)                        | -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관련 개정의정서가 2016년 4월 발효<br>- 투자협정의 유보목록에 대한 논의를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완료하기로 합의                                                             |

자료: ASEAN+1 FTA 협정문을 토대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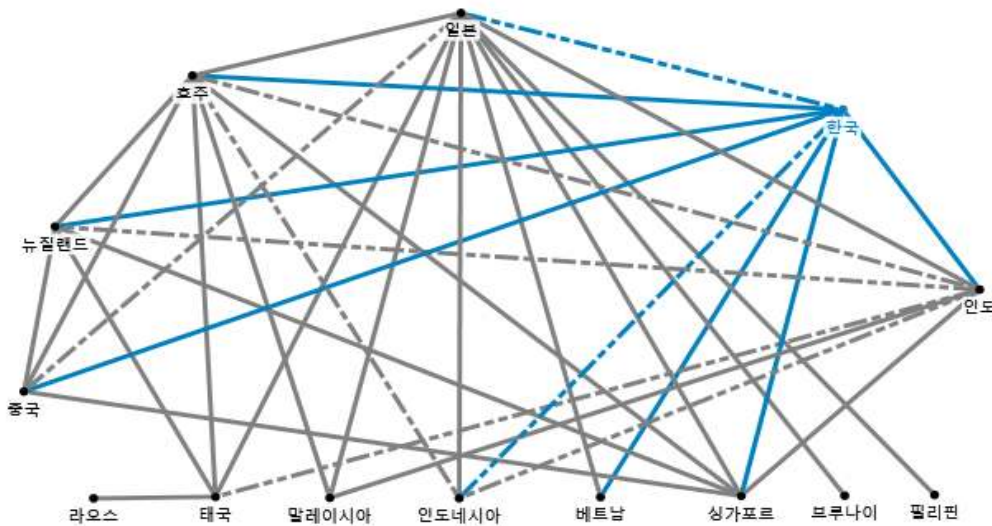
2) 빌트인 어젠다 방식이란 민감한 쟁점을 추후 재논의하도록 별도 의제로 설정하여 선 타결 후 협상하는 방식을 말함.

3) 해당 7개국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필리핀임. 이 중 일·베트남 EPA는 투자분야를 양자간 BIT로 대체하고 있음을 명시함.

■ RCEP 참여국들은 ASEAN+1 FTA뿐만 아니라 한·베트남 FTA, 일·CEPA, 인도·말레이시아 CECA, 중·태국 FTA 등 **다층적으로 양자간 FTA를 맺고 있음.**

- 아세안의 FTA 체결국(ASEAN FTA Partner, 이하 AFP)간 미체결 FTA는 중·인도, 일·뉴질랜드<sup>4)</sup>이며, 인도·호주, 인도·뉴질랜드, 한·중·일 FTA의 경우 현재 공동연구 또는 협상이 진행 중임.

그림 1. RCEP 참여국간 기체결 FTA



주: 1) ASEAN+1 FTA는 그림에서 제외함.

2) 점선은 공동연구 또는 협상이 진행 중인 FTA임.

자료: ESCAP의 아시아태평양 무역 투자 데이터베이스(Asia Pacific Trade and Investment Database)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역내 다수의 기체결 FTA가 존재하여 RCEP으로 인한 무역창출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FTA의 개선 및 규범의 조화를 통한 역내 생산네트워크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음.
- 특히 가치사슬이 여러 협상국에 걸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 규정 조화 등으로 인한 역내 거래비용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임.

## 나. RCEP 추진 현황

■ 16개 협상국은 2012년 8월 RCEP **협상지침(Guiding Principles)**을 확정하였으며, 당해 11월 협상개시 선언 이후 총 16차 협상을 진행하였음.

- 8가지 기본지침은 ① WTO 협정과의 일관성 확보 ② 기존 ASEAN+1 FTA보다 상당히 개선된 협정을 목표 ③ 무역 및 투자의 투명성과 원할화 확보 ④ 개발도상국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유연성(flexibility)** 및

4) 뉴질랜드와 일본은 양자간 FTA를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TPP 및 RCEP에 동시 참여하고 있음.

특별우대조치(SDT: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를 포함 ⑤ 협상 참여국 기체결 FTA의 지속 ⑥ 추가 참여 조항(open accession clause)의 포함 ⑦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과 역량강화 ⑧ 상품·서비스·투자, 여타 분야의 병행협상(parallel negotiation)임.

■ RCEP은 2015년 협상종결을 목표로 2013년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참여국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뚜렷한 주도 국가가 없어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으며, 타결이 당초 2015년에서 2016년으로 연기된 바 있음.

- 참여국간 의견 불일치로 협상이 지연되어 2016년 연내 목표달성 또한 불가능해지자, 16개국 정상은 최종 타결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공동성명(Joint Leaders' Statement on the RCEP)을 29차 아세안 정상회의 및 관련 회의에서 발표하였음.<sup>5)</sup>
- o 공동성명 발표 이후 16개 참여국은 공식적인 타결시한을 선언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 아세안 국가 등은 2017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힘.<sup>6)</sup>

■ RCEP 협상을 위해서 총 8개의 작업반(working group), 6개의 소작업반(sub-working group)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조달, 무역구제 분야의 협상을 위한 전문가 회의가 진행되었음.

- 작업반: 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기술협력, 지재산, 경쟁, 법률제도, 전자상거래(8개)
- 소작업반: 원산지, 통관 및 무역 원활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표준·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절차 (STRACAP=TBT), 금융, 통신(6개)

■ 15차 협상에서 경제·기술 협력(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16차 협상에서 중소기업(Small and Medium Enterprises) 부문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상품·서비스·투자 자유화 등 주요 분야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양허 초안과 투자유보 리스트 초안이 모두 제출된 상태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품 및 서비스 양허 초안에 대한 양허개선 요구안을 제출하였고, 일부 국가는 투자유보 리스트에 대해서도 개선 요구안을 제출하였음.<sup>7)</sup>

5) 2016년 9월 8일 29차 아세안 정상회의 및 관련회의에서 16개국 정상은 RCEP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각국이 협력해 협상을 더욱 심화시키기로 합의함.

6) <http://www.cnbc.com/2016/12/06/reuters-america-indonesia-says-2017-target-to-complete-china-led-regional-trade-deal.html>(검색일: 2017. 1. 8); <http://gbtimes.com/business/china-wants-conclude-rcep-trade-talks-2017>(검색일: 2017. 1. 8).

7) <https://www.mfat.govt.nz/en/trade/free-trade-agreements/agreements-under-negotiation/rcep>(검색일: 2017. 1. 8).

### 3. 분야별 주요 쟁점

#### 가. 상품무역 자유화

##### ■ 상품무역 자유화의 주요쟁점은 ① 관세철폐 수준 ② 공통 양허안 채택 여부임.<sup>8)</sup>

- 관세철폐 수준뿐만 아니라 협상 참여국에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는 공통 양허안 채택에 대해 협상국간 이견이 존재하여 왔음.

##### [관세철폐 수준]

■ RCEP 상품협상의 출발점이 될 ASEAN+1 FTA의 상품협상 내용을 살펴보면, 아세안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품목수 기준) 약 91% 관세철폐를 수용하고 있으며, 국가별/FTA별 관세철폐 수준(%)이 상이함을 알 수 있음.

- 인도네시아와 아세안의 후발개도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경우 ASEAN+1 FTA의 평균 관세철폐 범위가 90% 이하임.
- 캄보디아,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세안 8개국은 AIFTA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관세철폐를 허용하고 있음.

표 3. ASEAN+1 FTA 관세철폐 범위

(단위: %)

| 구분      | AANZFTA | ACFTA | AIFTA | AJCEP | AKFTA | 평균    |
|---------|---------|-------|-------|-------|-------|-------|
| 브루나이    | 99.2    | 98.3  | 85.3  | 97.7  | 99.2  | 95.9  |
| 캄보디아    | 89.1    | 89.9  | 88.4  | 85.7  | 97.1  | 90.0  |
| 인도네시아   | 93.7    | 92.3  | 48.7  | 91.2  | 91.2  | 83.4  |
| 라오스     | 91.9    | 97.6  | 80.1  | 86.9  | 90.0  | 89.3  |
| 말레이시아   | 97.4    | 93.4  | 79.8  | 94.1  | 95.5  | 92.0  |
| 미얀마     | 88.1    | 94.5  | 76.6  | 85.2  | 92.2  | 87.3  |
| 필리핀     | 95.1    | 93.0  | 80.9  | 97.4  | 99.0  | 93.1  |
| 싱가포르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태국      | 98.9    | 93.5  | 78.1  | 96.8  | 95.6  | 92.6  |
| 베트남     | 94.8    | -     | 79.5  | 94.4  | 89.4  | 89.5  |
| 호주·뉴질랜드 | 100.0   |       |       |       |       |       |
| 중국      |         | 94.1  |       |       |       |       |
| 인도      |         |       | 78.8  |       |       |       |
| 일본      |         |       |       | 91.9  |       |       |
| 한국      |         |       |       |       | 90.50 |       |

주: 1) HS 6-digit 기준(품목수 기준)으로 작성됨.

2) ACFTA하의 베트남 데이터가 부재하며, ACFTA하의 미얀마 데이터 또한 HS01-HS08 데이터가 부재함.

자료: Yoshifumi Fukunaga and Ikumo Isono(2013), "Taking ASEAN+1 FTAs towards the RCEP: A Mapping Study," ERIA Discussion Paper Series, p. 8, ERIA.

8) Megha Kumar and Benjamin Charlton(2017. 1. 23), "RCEP will step into gap as Trump pulls out of TPP," Oxford Analytica(검색일 2017. 1. 23).

■ AFP의 대(對)아세안 관세철폐 범위 역시 상이하여 **AFP간에도 상품양허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호주와 뉴질랜드의 對아세안 관세철폐 수준은 100%에 달함.
  - o 호주는 중·호주 FTA하에서도 100% 관세철폐에 합의한 바 있음.
- 인도는 아세안의 FTA 파트너 중 가장 낮은 對아세안 관세철폐 범위(78.8%)를 보임.
  - o 인도는 일·인도 CEPA에서 일본에 대해 89.7%, 한·인도 CEPA에서 한국에 대해 74.5% 관세를 철폐함.<sup>9)</sup>

■ RCEP 협상 참여국의 시장개방 수준이 상이하여 **상품양허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인도 및 인도네시아의 반대로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공통 양허안]

■ 아세안의 경우 FTA에서 중첩되는 관세철폐 품목이 **평균적으로 73.3%에 지나지 않아** 협상 참여국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 양허안을 채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부록 표 1]의 양자간 현시비교우위지수 분석에 의하면 RCEP 협상국의 비교우위가 교역 상대국에 따라 다소 상이하며, 따라서 국가별로 서로 다른 관세철폐 품목을 제시할 유인이 존재함을 알 수 있음.
-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ASEAN+1 FTA에서 중첩되는 품목 범위가 46%밖에 되지 않아 공통 양허안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됨.

표 4. ASEAN+1 FTA 관세철폐 항목 분포

(단위: %)

|       | 5개의 ASEAN+1 FTA에서<br>관세를 철폐한 품목 | FTA마다 철폐여부가 다른<br>품목 | 5개의 ASEAN+1 FTA에서<br>모두 제외된 품목 |
|-------|---------------------------------|----------------------|--------------------------------|
| 브루나이  | 84.1                            | 15.9                 | 0                              |
| 캄보디아  | 64.3                            | 35.3                 | 0.4                            |
| 인도네시아 | 46                              | 52.8                 | 1.2                            |
| 라오스   | 68                              | 31.6                 | 0.4                            |
| 말레이시아 | 76                              | 22.9                 | 1.1                            |
| 미얀마   | 66.6                            | 31.8                 | 1.6                            |
| 필리핀   | 74.6                            | 24.4                 | 1                              |
| 싱가포르  | 100                             | 0                    | 0                              |
| 태국    | 75.6                            | 24.3                 | 0.1                            |
| 베트남   | 78.1                            | 19.1                 | 2.8                            |
| 평균    | 73.3                            | 25.8                 | 0.9                            |

주: HS 6-digit 기준(품목수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Yoshifumi Fukunaga and Ikumo Isono(2013), "Taking ASEAN+1 FTAs towards the RCEP: A Mapping Study," ERIA Discussion Paper Series, p. 8, ERIA.

9) 이웅, 조충제, 송영철, 최윤정, 이정미(2014),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p. 5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실제로 아세안의 일부 국가와 인도가 국가별로 다른 관세인하를 제시하는 3-tier 접근법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알려짐.

- 3-tier 접근법이란 회원국을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그룹별로 서로 다른 관세율 인하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인도의 경우 아세안 국가들에 80%, 한국과 일본에 65%, 호주, 뉴질랜드, 중국에 대해서는 42.5% 철폐를 제안하였음.<sup>10)</sup>

■ 관세인하 품목과 폐지기간 등 개방수준을 국가별로 달리하게 되면, 역내 중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기체결 FTA와 함께 복잡성이 가중되어 Mega-FTA의 활용이 어려워질 수 있음.

- 공통 양허안이 채택되지 못하면 16개 참여국은 복수의 관세철폐 방식을 적용하게 되며, 그 결과 RCEP 내 복잡한 관세철폐 일정이 존재하게 됨.
- 관세인하 일정뿐만 아니라 원산지규정의 누적기준 적용에 있어 복잡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16개 협상국은 회기간 장관회의(Intersessional Ministerial Meeting)<sup>11)</sup> 및 16차 협상에서 공통양허 목표를 집중 논의하였음.

- RCEP은 높은 수준을 추구하되 국가별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어, 공통 양허안을 채택하되 그 안에서 다양한 유연성(flexibility) 및 개별양허(deviation)가 존재하는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o 국별/국가그룹별 상이한 관세인하 기간(phase-out period)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음.
- 유연성 및 개별양허를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수준의 공통 양허안을 따르게 된다면 높은 수준의 공통 양허안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아 낮은 수준의 자유화에 머무를 가능성도 존재함.

## [원산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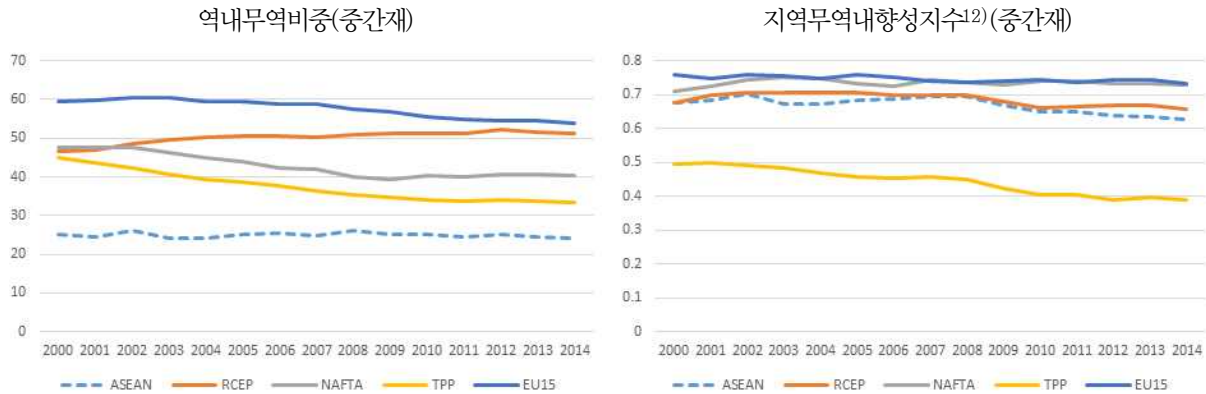
■ RCEP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규정의 조화,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합의가 요구됨.

- [그림 2]에 의하면, RCEP 경제권 내 중간재의 역내무역비중 및 역내편향성이 상당히 높은 특성을 보임.
- 역내 생산네트워크 확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역내 분업구조를 고려한 원산지규정의 도입이 요구됨.

10) Kyle Robert Cote and Purna Chandra Jena(2015), "India's FTAs and RCEP Negotiations," p. 12, Economics & Environment (CUTS CITEE) Discussion paper, CUTS Centre for International Trade.

11) 2016년 11월 4일 필리핀 세부에서 16개국 통상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회기간 장관회의가 개최됨. '회기간 회의'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분야에 한정하여 개최되는 회의로, 공식협상 중간에 열리는 소규모 회의를 말함.

그림 2. RCEP 및 주요 경제권의 중간재 역내무역비중과 지역무역내향성 지수 추이



자료: RIETI-TID(검색일: 2017. 1. 3).

자료: RIETI-TID(검색일: 2017. 1. 3).

- AANZFTA, AJCEP, AKFTA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실질적 변형 기준은 ‘역내가치포함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이 FOB 가격의 40% 이상<sup>13)</sup>이거나 HS 4단위 세번 변경이 일어난 상품’이며, ACFTA는 ‘RVC 기준 40% 이상인 상품’임. AIFTA의 경우 ‘RVC 기준 35% 이상이고, HS 6단위 세번 변경이 일어난 상품’임.<sup>14)</sup>
-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ASEAN + 1 FTA의 원산지 규정상의 조화가 요구되며, AIFTA나 ACFTA의 규정보다 완화된 규정 채택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나.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 RCEP은 일괄타결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상품·서비스·투자 분야를 병행협상 방식으로 논의하고 있어 관세철폐 범위에 대해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협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기체결 ASEAN+1 FTA의 서비스, 투자 협정은 각각 열거주의(positive list), 포괄주의(negative list) 방식<sup>15)</sup>을 적용하고 있어 RCEP 역시 동일한 방식을 논의의 시작점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됨.
- TPP 참여국을 제외한 아세안 국가들은 포괄주의 방식을 적용한 서비스협정을 체결한 경험이 없어 TPP와 같이 포괄주의 방식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임.
  - o 한·뉴질랜드 FTA(2015년 발효), 한·싱가포르 FTA(2006년 발효), 한·호주 FTA(2014년 발효)의 서비스협정은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함.

12) 지역무역내향성지수는 그 값이 0보다 크면 역내편향적, 0보다 작으면 역외편향적, 0에 가까울수록 지리적으로 중립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음.

13) 부가가치 기준에 의한 원산지 판정방법으로, RVC를 계산하는 방법은 협정별로 다소 상이함. AKFTA에서는 공제법(Build-Down) 또는 집적법(Build-Up)을 통해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계산하며, 이 값이 40% 미만인 상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함.

14) ASEAN+1 FTA 협정문 및 Yoshifumi Fukunaga and Ikumo Isono(2013), p. 11 참고.

15) 개방할 영역을 명시하는 방식을 열거주의, 개방을 허용하지 않는 분야만을 기술하여 그 외 분야를 모두 개방하는 방식을 포괄주의라고 지칭함.

■ [서비스] 낮은 수준의 상품시장 자유화를 주장해온 인도는 3-tier 접근법을 포기하는 대신 높은 수준의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주장해왔음.

- 인도는 총 155개의 소분야(sub-sector) 중 120개 소분야(sub-sector)의 자유화를 제안하였으며,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또는 Mode 3) 관련 60개의 소분야에 대해 100% 외국인지분을 심사 없이 허용할 것을 제안했음.<sup>16)</sup>
- 또한 인도는 자연인의 자유로운 이동(MNPs: Movement of Natural Persons 또는 Mode 4) 관련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아세안 측에서 이를 반대하는 입장임.<sup>17)</sup>
- o 2016년 11월 4일 장관회의에서 협상국들은 Mode 4 자유화를 별도의 장(chapter)에서 다룰 것을 합의.<sup>18)</sup>

■ [투자] 투자분야의 관련 규정으로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요건금지, 고위경영진 및 이사 국적요건 부여금지, 투자자·국가분쟁해결 등이 있음.

표 5. ASEAN+1 FTA의 투자 자유화 관련 규정

| 구분             | AANZFTA                | ACFTA                              | AIFTA            | AKFTA            |
|----------------|------------------------|------------------------------------|------------------|------------------|
| 내국민대우          | 설립 전·후 단계에 모두 적용       | 설립 후 단계에만 적용                       | 설립 전·후 단계에 모두 적용 | 설립 전·후 단계에 모두 적용 |
| 최혜국대우          | 규정 없음<br>(작업반에서 추후 논의) | 설립 전·후 단계에 모두 적용<br>(ISDS에 대해서 예외) | 규정 없음            | 설립 전·후 단계에 모두 적용 |
| 비합치조치의 현상동결 의무 | 현재유보에 적용               | 규정 없음 <sup>19)</sup>               | 현재유보에 적용         | 현재유보에 적용         |
| 투자자·국가분쟁해결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 이행요건 금지        | TRIMs 수준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 TRIMs 수준         |
| 국적요건 부여 금지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 규정 없음            | 적용               |

주: 1) AJCEP의 경우 투자협정이 부재

2) AANZFTA, AIFTA, AKFTA 모두 투자 유보안을 협의 중에 있음.

3) 아세안포괄적투자협정(ACIA: 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의 경우 포괄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현상동결 의무는 적용되고 있지 않음.

자료: ASEAN+1 FTA 협정문과 김관호(201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자분야 협정의 의의와 전망」, 『국제지역연구』, 제18권 제2호, p. 25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기체결 ASEAN+1 FTA 중에서 한·아세안 FTA가 가장 높은 수준의 내용을 포함한 투자협정을 맺고 있음.
- o RCEP 투자협정이 ASEAN+1 FTA에서 개선된 협정이 되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FTA 수준 이상의 협정내용을

16) <http://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economy/policy/india-ready-to-abolish-tariff-structure-if-rcep-promises-fdi/articleshow/53626290.cms>(검색일: 2017. 1. 5).

17) <http://www.livemint.com/Politics/7Zfm9yQYP6XrcNztK7APM/RCEP-faces-services-logjam.html>(검색일: 2017. 1. 5).

18) <http://www.livemint.com/Politics/oYhlhzbUGxd382IGt3OvUN/RCEP-agrees-to-work-on-modalities-for-movement-of-skilled-wo.html>(검색일: 2017. 1. 5).

19) ACFTA 투자협정의 경우 투자 유보안, 향후 투자 유보안 논의 계획, 비합치조치의 현상동결 의무 모두 부재함.

달성해야 할 것임.

- 협상국들은 양자간 투자협정, FTA의 투자협정 등 다수의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들의 통합 및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임.

## 다. 기타 쟁점

- RCEP 협상분야 중 ASEAN+1 FTA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의미 있는 조항이 부재한 분야로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경쟁(국영기업), 정부조달** 등이 있음.<sup>20)</sup>

표 6. 기체결 ASEAN+1 FTA에서 부재한 분야

| ASEAN+1 FTA | RCEP 협상분야 중 기체결 FTA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의미 있는 조항이 부재한 분야                                                                                                                |
|-------------|------------------------------------------------------------------------------------------------------------------------------------------------------------------|
| ACFT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정책</li> <li>- 전자상거래(관련 조항이 있으나 협력차원에서 언급한 수준)</li> <li>- 정부조달</li> <li>- 지적재산권<sup>21)</sup></li> </ul>               |
| AKFT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정책</li> <li>- 전자상거래</li> <li>- 정부조달</li> </ul>                                                                        |
| AJCE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정책</li> <li>- 전자상거래</li> <li>- 정부조달</li> <li>- 지적재산권</li> </ul>                                                       |
| AIFT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정책</li> <li>- 무역구제(Antidumping, Countervailing measures)</li> <li>- 전자상거래</li> <li>- 정부조달</li> <li>- 지적재산권</li> </ul> |
| AANZFT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정책(관련 조항이 있으나 협력차원에서 언급한 수준)</li> <li>- 정부조달</li> </ul>                                                               |

자료: ADB FTA database, ASEAN+1 FTA 협정문을 토대로 저자 작성.

- [표 6]은 이하 기술된 분야별 조항이 부재한 경우를 정리하였음.
- [경쟁정책] 독립적인 경쟁당국 설립 또는 유지, 반경쟁적 사업행위 금지, 경쟁법의 조화, 정보제공 관련 조항 등
- [전자상거래] 서류 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 전자인증 및 디지털 인증서, 온라인 소비자 보호, 온라인 정보 보호 등

20) 협정문 내 해당 조항이 없거나 추후협상 분야로 언급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 또는 WTO-plus 수준의 협정이 부재한 경우를 말함.

21)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력 관련 양해각서(MoU)가 2009년 12월 체결되었으며, 체결 후 5년간 발효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5년 연장됨. 해당 양해각서에서는 **지적재산권 관련 협력만을** 기술하고 있으며, 유전자원·전통지식(genetic resource, traditional knowledge)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함.

- [정부조달] 점진적 자유화, 내국민대우, 차별 금지 원칙, 인터넷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의 출판, 공공조달 체제의 명시 등
-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의 조화(harmonization), 집행(enforcement), 내국민대우, TRIPs 협정에 언급되지 않은 국제협약 가입조항 등
  - o AJCEP의 경우 TRIPs 협정에 언급되지 않은 국제협약 가입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RCEP은 후발개도국을 포함하고 있어 TPP 수준의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전자상거래 관련 분야 협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ASEAN+1 FTA에서 아세안은 경쟁정책,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관련 분야 협상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협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RCEP의 상품·서비스·투자를 제외한 여타 분야의 수준은 기체결 ASEAN+1 FTA처럼 협력 및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측면을 강조한 조항으로 구성될 수 있음.

■ [경쟁정책] 국영기업 문제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및 아세안 개도국은 특혜금리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영기업을 지원하고 있어, 국영기업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것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 일본, 호주 등의 선진국은 경쟁중립성(competitive neutrality) 원칙<sup>22)</sup>을 강조하며, 국영기업 조항의 포함을 주장할 것임.

■ [지적재산권] 지재권의 주된 쟁점은 TRIPs-plus 조항 포함 여부, 의약품 특허, 유전자원·전통지식(GRTK), 지리적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 등으로 예상됨.

- 의약품 자료 보호 및 특허기간 등 공중보건 관련 이슈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이 대립되는 이슈로 향후 협상 진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유전자원·전통지식의 접근과 이익 공유 관련 FTA 및 국제기구 등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바, RCEP 협상 과정에서도 GRTK 관련 논의가 예상됨.<sup>23)</sup>

22) 정부가 정부소유 기업에 대하여 단지 정부소유라는 이유만으로 경쟁상의 이익(세금 차등부과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

23) 풍부한 유전자원·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인도, 태국 등은 GRTK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TRIPs 개정 요구를 제기한 바 있으며, 중국은 GRTK 관련 조항을 FTA의 지식재산권 장(chapter)에서 협상해왔음(중·뉴질랜드 FTA, 중·페루 FTA, 중·스위스 FTA, 중·코스타리카 FTA).

## 4. 주요국의 입장

■ **[중국]** 중국은 RCEP을 통해 무역과 투자 자유화의 이익을 누리고,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이를 새로운 글로벌 통상질서 수립에 이용하고자 함.

-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RCEP 및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를 통해 국제경제질서 수립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함.
- RCEP 타결을 통한 역내 생산네트워크 강화,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 등 자국의 이익 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나, 중국의 리더십이 RCEP 협상과정에서 발휘되지 않고 있음.
- o RCEP은 아세안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그 원안이 일본이 제안한 ASEAN+6의 형태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중국이 RCEP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일본]**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TPP 타결에 집중해왔으며, TPP 타결 이후 RCEP 협상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음.

- 일본은 2017년 1월 20일 TPP 비준을 완료하였으며, TPP 발효를 위해 지속적으로 미국을 설득하는 등 여타 가능성을 타진하여 왔으나 미국이 TPP에서 공식 탈퇴함에 따라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아세안]** 아세안 10개국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아세안 내부적으로 합의과정을 거친 뒤 AFP와 협상을 벌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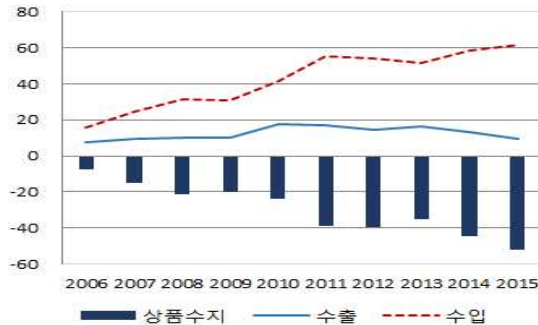
- 아세안 내부적으로 합의가 지연됨에 따라 RCEP 전체 협상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음.
-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4년 조코위 정부 출범 이후 국내 경제개혁에 집중하면서 RCEP에 대한 관심이 낮은 상태임.
- o 최근 조코위 정부가 부분적으로 외국인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 기존의 보호주의 기조가 이어지면서 비관적 전망이 강화되고 있음.

■ **[인도]** RCEP을 그동안 자신이 배제되었던 역내 지역무역협정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으며, 협정 초기부터 상품분야에 소극적, 서비스분야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고수함.

- 인도는 RCEP을 동남아를 넘어 일본, 호주 등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으며, APEC과 TPP에서 배제된 인도에 RCEP은 중요한 자유무역협정임.
- 인도의 2015년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520억 달러로, 중국에 대한 관세가 인하될 경우 무역적자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인도는 서비스 자유화로부터 이익을 기대하며 높은 수준의 Mode 4 자유화를 RCEP에서 논의하고자 하나 아세안의 반대 입장이 지속되고 있음.<sup>24)</sup>

그림 3. 인도의 대중국 무역수지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6. 11. 17).

그림 4. 인도의 對세계 서비스무역수지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6. 11. 17).

■ [호주와 뉴질랜드] 호주와 뉴질랜드는 모두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RCEP 협정 타결을 원하고 있음.

- 호주, 뉴질랜드 등은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TPP 발효를 추진, 이후 미국이 12번째 가입국이 되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음.
- o 뉴질랜드 의회는 TPP 비준 및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개정안(TPPA Amendment Bill)을 2016년 11월 15일 통과시키는 등 TPP 발효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음.
- TPP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높은 수준의 RCEP 협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5.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가. 협상일정 전망

■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응하여 신속히 RCEP 협상을 마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하고 있어, 16개 참여국들이 2017년 내 협상타결을 목표로 조속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됨.

- 타결시한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협상 참여국 다수가 2017년 타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TPP 회원국 중 RCE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7개국의 경우 미국의 TPP 탈퇴 이후 적극적인 태도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각국의 상이한 발전단계, 이해관계의 불일치, 정책 및 제도 차이로 합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포괄적이

며 높은 수준의 개방 달성을 목표로 할 경우 RCEP 협상의 조기 타결이 어려울 수 있음.

■ 기체결 ASEAN+1 FTA에서 개선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RCEP은 단순히 ASEAN+1 FTA를 단일하게 통합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될 수 있음.

- RCEP이 낮은 수준의 자유화에 머무른다면, 역내 기체결 FTA와 더불어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RCEP은 기체결 ASEAN+1 차원의 FTA를 개선하고 역내 규범의 조화를 통해 역내 중층적으로 형성된 FTA로 인한 스파게티볼(Spaghetti Bowl)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며, 역내 생산네트워크의 확대를 통한 생산 활동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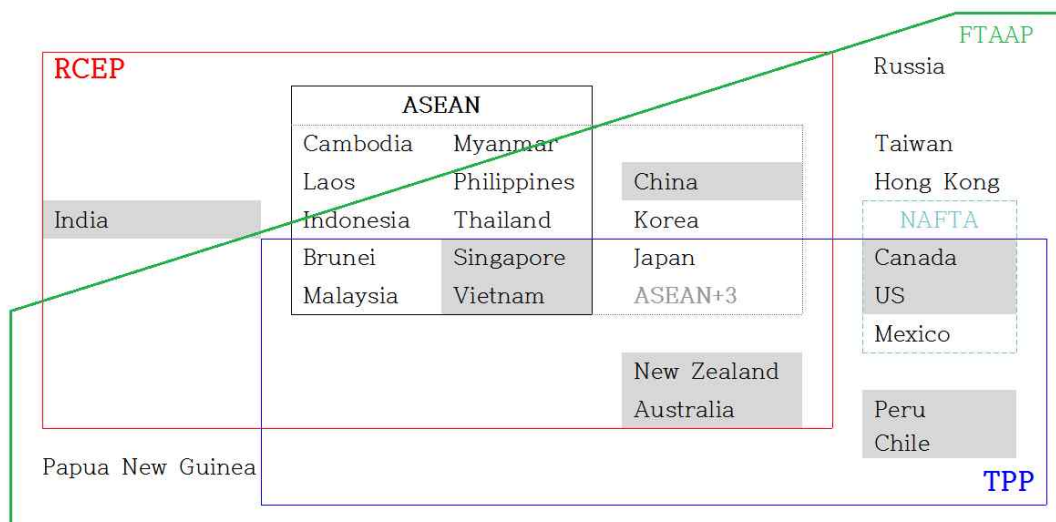
- 협상 참여국들은 이미 양자간 FTA를 맺고 있어 RCEP으로 인한 무역창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기체결 FTA의 개선 및 규범의 조화 등을 통해 이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 협상 참여국은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및 표준의 간소화와 통일 등을 통해 역내 거래비용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임.

■ RCEP 또는 TPP가 FTAAP으로 수렴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RCEP의 협상타결 여부 및 합의수준은 향후 아태 역내 경제통합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님.

- TPP의 발효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FTAAP의 초석으로서 갖는 RCEP의 의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5. 아시아·태평양 역내 지역통합



주: 음영은 한국과 FTA 체결국가.

## 나. 한국의 협상전략 및 시사점

- 미국의 보호무역기조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RCEP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역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완화하고, 회원국간 개발격차 감소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를 대체할 시장으로 중국, 인도, 아세안 등의 지역에 집중하고, RCEP 협상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와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그룹화하여 이해관계 분야를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며, 여타 참여국의 입장을 수용하고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는 RCEP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 될 수 있도록 협상을 주도해야 하며, 이를 통해 향후 FTAAP 등 아태지역의 신통상질서 구축에 적극 참여해야 함.
- 
- 역내 중·일 간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도권 경쟁 이외에도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어업분쟁, 한·중 사드배치 관련 갈등, 한·일 위안부 협상문제 등 참여국간 여러 갈등요인이 존재하므로 면밀한 대응방안이 요구됨.
- 
- RCEP 타결이 역내 가치사슬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아시아·태평양 역내 무역의존도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 및 분석이 필요하며, 변화된 GVC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유연한 대응전략이 요구됨. **KIEP**

## [부록 1] RCEP 경제권 무역구조 현황

■ 최근 역내 국가간 무역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작성한 [부록 표 1] 비교우위 매트릭스에 의하면, 참여국의 對세계 비교우위와 對RCEP 비교우위가 유사하나, 상대국별 비교우위가 상이한 부문이 존재함을 알 수 있음.

- RIETI-TID의 2014년 원료, 가공재, 부품, 자본재, 소비재 5단계별 무역자료를 이용,<sup>25)</sup> Balassa(1965)의 방법을 차용하여 양자간현시비교우위(BRCA: Bilateral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지수를 계산함.<sup>26)</sup>

$$BRCA_{ij} = \frac{X_{ij}^k / X_{Wj}^k}{X_{ij} / X_{Wj}}$$

$X_{ij}^k$  i국에서 j국으로의 상품 k 수출액,  $X_{Wj}^k$  전 세계에서 j국으로의 상품 k 수출액,  $X_{ij}$  i국에서 j국으로의 수출총액,  $X_{Wj}$  전 세계에서 j국으로의 수출총액

- o 현시비교우위지수 값이 1보다 크면 비교우위가, 1보다 작으면 비교열위가 있다고 해석함.
- 무역상대국별 비교우위 분야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국에 서로 다른 관세양허 품목을 제안할 유인이 존재할 수 있음.
- o 부품분야에 對세계 비교우위를 갖는 아세안, 중국, 한국 등은 동 분야에 호주 및 뉴질랜드에 비교열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낮은 공업화 정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o 인도는 소비재 분야에 對세계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으나, 중국, 일본, 한국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부록 표 1. RCEP 국가들의 생산단계별 양자간 현시비교우위지수

| 수출<br>국     | 생산단계 | 對<br>아세안 | 對<br>호주 | 對<br>중국 | 對<br>인도 | 對<br>일본 | 對<br>한국 | 對<br>뉴질랜드 | 對<br>미국 | 對<br>세계 |
|-------------|------|----------|---------|---------|---------|---------|---------|-----------|---------|---------|
| 아<br>세<br>안 | 원료   | 0.77     | 2.26    | 0.43    | 0.76    | 0.52    | 0.52    | 1.95      | 0.28    | 0.64    |
|             | 가공재  | 1.12     | 1.29    | 1.19    | 1.20    | 1.38    | 1.21    | 1.35      | 0.61    | 1.03    |
|             | 부품   | 0.96     | 0.64    | 1.77    | 1.18    | 1.33    | 1.37    | 0.55      | 1.35    | 1.48    |
|             | 자본재  | 0.77     | 0.77    | 1.00    | 1.11    | 0.79    | 0.66    | 0.75      | 1.06    | 0.98    |
|             | 소비재  | 1.23     | 0.65    | 0.78    | 1.26    | 1.01    | 1.47    | 0.64      | 1.41    | 0.87    |
| 호<br>주      | 원료   | 3.23     |         | 2.81    | 1.65    | 2.06    | 2.77    | 0.78      | 0.69    | 4.01    |
|             | 가공재  | 1.00     |         | 0.27    | 0.63    | 1.28    | 0.41    | 1.27      | 1.09    | 0.76    |
|             | 부품   | 0.16     |         | 0.02    | 0.06    | 0.01    | 0.05    | 0.65      | 0.70    | 0.11    |
|             | 자본재  | 0.19     |         | 0.04    | 0.07    | 0.03    | 0.07    | 0.50      | 0.67    | 0.15    |
|             | 소비재  | 1.24     |         | 0.30    | 0.92    | 0.28    | 0.57    | 1.29      | 1.43    | 0.43    |

25) RIETI-TID는 UN Comtrade의 표준국제무역분류(SITC)의 통계를 원료, 중간재, 최종재의 세 단계 분류 후, 중간재를 가공재와 부품으로, 최종재를 자본재와 소비재로 총 다섯 단계로 세분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26) [부록 표 1]의 양자간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양자간 경쟁우위 분야를 개괄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정확한 비교우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산업별 비교우위지수를 산출·분석해야 할 것이며, 부가가치 기준에 근거한 수출액을 이용한 분석이 필요함.

부록 표 1. 계속

| 수출<br>국      | 생산단계 | 對<br>아세안 | 對<br>호주 | 對<br>중국 | 對<br>인도 | 對<br>일본 | 對<br>한국 | 對<br>뉴질랜드 | 對<br>미국 | 對<br>세계 |
|--------------|------|----------|---------|---------|---------|---------|---------|-----------|---------|---------|
| 중<br>국       | 원료   | 0.07     | 0.03    |         | 0.01    | 0.05    | 0.08    | 0.05      | 0.03    | 0.05    |
|              | 가공재  | 0.95     | 0.80    |         | 1.25    | 0.62    | 1.07    | 0.86      | 0.62    | 0.71    |
|              | 부품   | 1.02     | 0.93    |         | 2.21    | 1.59    | 1.58    | 0.85      | 0.91    | 1.16    |
|              | 자본재  | 1.92     | 1.52    |         | 3.52    | 2.42    | 1.85    | 1.29      | 1.92    | 2.05    |
|              | 소비재  | 1.11     | 1.13    |         | 1.83    | 1.69    | 1.51    | 1.31      | 1.20    | 1.27    |
| 인<br>도       | 원료   | 0.64     | 0.37    | 0.77    |         | 0.28    | 0.27    | 0.34      | 0.11    | 0.35    |
|              | 가공재  | 1.48     | 1.35    | 2.36    |         | 2.28    | 2.24    | 1.07      | 2.05    | 1.65    |
|              | 부품   | 0.33     | 0.80    | 0.25    |         | 0.44    | 0.28    | 0.70      | 0.59    | 0.49    |
|              | 자본재  | 0.51     | 0.32    | 0.20    |         | 0.18    | 0.28    | 0.27      | 0.18    | 0.33    |
|              | 소비재  | 1.80     | 1.41    | 0.44    |         | 0.82    | 0.51    | 1.77      | 1.31    | 1.36    |
| 일<br>본       | 원료   | 0.08     | 0.13    | 0.09    | 0.07    |         | 0.13    | 0.01      | 0.02    | 0.09    |
|              | 가공재  | 0.96     | 1.02    | 1.22    | 1.12    |         | 1.49    | 0.64      | 0.68    | 0.92    |
|              | 부품   | 1.44     | 1.16    | 1.62    | 3.67    |         | 1.44    | 1.03      | 2.00    | 1.86    |
|              | 자본재  | 1.49     | 0.92    | 1.86    | 3.11    |         | 1.53    | 1.11      | 1.15    | 1.52    |
|              | 소비재  | 0.63     | 1.25    | 0.98    | 0.70    |         | 0.46    | 1.59      | 1.09    | 0.78    |
| 한<br>국       | 원료   | 0.07     | 0.03    | 0.01    | 0.04    | 0.08    |         | 0.02      | 0.01    | 0.04    |
|              | 가공재  | 1.35     | 1.93    | 1.36    | 1.74    | 1.81    |         | 2.42      | 1.09    | 1.18    |
|              | 부품   | 1.30     | 0.67    | 2.13    | 2.92    | 1.85    |         | 0.53      | 1.66    | 2.06    |
|              | 자본재  | 0.73     | 0.88    | 1.43    | 1.48    | 1.11    |         | 0.46      | 1.18    | 1.21    |
|              | 소비재  | 0.40     | 0.67    | 0.31    | 0.51    | 0.50    |         | 0.66      | 0.93    | 0.50    |
| 뉴<br>질<br>랜드 | 원료   | 0.38     | 2.17    | 0.81    | 1.75    | 0.33    | 1.07    |           | 0.23    | 0.94    |
|              | 가공재  | 0.99     | 0.91    | 0.55    | 0.39    | 1.53    | 1.16    |           | 1.26    | 0.79    |
|              | 부품   | 0.13     | 0.34    | 0.02    | 0.21    | 0.02    | 0.09    |           | 0.24    | 0.14    |
|              | 자본재  | 0.13     | 0.28    | 0.24    | 0.30    | 0.11    | 0.19    |           | 0.50    | 0.30    |
|              | 소비재  | 5.30     | 1.42    | 6.56    | 1.12    | 2.10    | 2.45    |           | 1.85    | 2.47    |

주: 2014년 기준, 비교우위 부문을 음영으로 표시.

자료: RIETI-TID(검색일: 2017. 1. 3)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부록 2] RCEP 경제권 무역환경

■ 역내 양자간·복수국 간 FTA 추진이 증가함에 따라 역내 무역자유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외에 비관세무역 장벽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비관세 무역조치로 크게 반덤핑(ADP: Antidumping), 상계관세(CV: Countervailing), 수량제한(QR: Quantity Restriction), 긴급수입제한(SG: Safeguard),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특별긴급수입제한(SSG: Special Safeguard),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rade), 관세할당제도(TRQ: Tariff Quota), 수출보조(XS: Export subsidy) 등이 있음.
- [부록 표 2]에 의하면 역내 실행 또는 발의 중인 주된 비관세 무역조치는 SPS와 TBT이며, 이는 특정 역내국 대상이 아닌,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역내 반덤핑조치의 주된 대상국은 한국·중국·일본이며, 인도는 중국을 대상으로 110여 개의 반덤핑조치를 발의 및 실행 중에 있음.
  - o 이는 인도의 對중국 대규모 무역적자의 영향으로 보임.

■ RCEP 협상에서 역내 존재하는 비관세무역 장벽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방안 논의가 요구됨.

부록 표 2. RCEP 국가들의 실행 및 발의 중인 비관세조치 현황

(단위: 누적 개수)

[illegible]

부록 표 2. 계속

| 시<br>행<br>국      | 대상국 | 아세안 |   | 인도 |   | 일본 |    | 중국 |    | 한국 |   | 뉴질랜드 |   | 호주 |    | 모든 국가 |     |
|------------------|-----|-----|---|----|---|----|----|----|----|----|---|------|---|----|----|-------|-----|
|                  |     | I   | F | I  | F | I  | F  | I  | F  | I  | F | I    | F | I  | F  | I     | F   |
| 중<br>국           | ADP |     |   |    | 5 | 4  | 18 |    |    | 2  | 9 |      |   |    |    |       | 20  |
|                  | QR  |     |   |    |   |    |    |    |    |    |   |      |   |    |    | 902   | 117 |
|                  | SPS |     |   |    |   |    |    |    |    |    |   |      |   |    |    | 1075  | 100 |
|                  | TBT |     |   |    |   |    |    |    |    |    |   |      |   |    |    |       | 10  |
|                  | TRQ |     |   |    |   |    |    |    |    |    |   |      |   |    |    |       |     |
| 한<br>국           | ADP |     |   | 1  | 4 |    | 6  | 1  | 10 |    |   |      |   |    |    |       | 90  |
|                  | QR  |     |   |    |   |    |    |    |    |    |   |      |   |    |    | 477   | 34  |
|                  | SPS |     |   | 1  | 1 | 2  | 1  | 1  | 1  |    |   | 1    |   | 1  |    | 722   | 71  |
|                  | TBT |     |   |    |   |    |    |    |    |    |   |      |   |    |    |       | 67  |
|                  | TRQ |     |   |    |   |    |    |    |    |    |   |      |   |    |    |       |     |
| 뉴<br>질<br>랜<br>드 | ADP |     |   |    |   |    |    |    | 1  |    |   |      |   |    |    |       | 77  |
|                  | QR  |     |   |    |   |    |    |    |    |    |   |      |   |    |    |       |     |
|                  | SPS |     |   |    | 1 |    |    |    | 1  |    | 1 |      |   | 3  | 14 | 403   | 89  |
|                  | TBT |     |   |    |   |    |    |    |    |    |   |      |   |    |    | 97    | 8   |
| 호<br>주           | ADP |     |   | 3  |   | 4  | 4  | 13 | 2  | 8  |   |      |   |    |    |       | 118 |
|                  | QR  |     |   |    |   |    |    |    |    |    |   |      |   |    |    |       |     |
|                  | SPS |     |   | 2  |   | 1  | 4  | 1  | 2  | 1  | 2 | 3    | 2 |    |    | 331   | 29  |
|                  | TBT |     |   |    |   |    |    |    |    |    |   |      |   |    |    | 183   | 20  |

주: 위의 수치는 발의(initiated, I) 또는 시행(into force, F)된 조치의 누적 숫자임. 역내 그 정도가 미미한 비관세조치는 표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WTO 종합무역정보포털 I-TIP(검색일: 2017. 1. 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 협상 참여국의 지재권 관련 주요 조약 가입현황을 통해 역내 지재권관련 보호 수준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주된 국제조약으로 세계 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설립협약,<sup>27)</sup>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보호에 관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법조약(PLT: Patent Law Treaty, 상표법 조약(TLT: Trademark Law Treaty), 상표권 국제출원에 관한 마드리드 시스템(Madrid System),<sup>28)</sup>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등이 있음.
- o 특허법조약 및 상표법조약은 각국 특허 및 상표권 제도의 절차 등을 통일·간소화함으로써 출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비용절감을 도모하는 국제협약임.
- o 특허협력조약 및 마드리드 시스템은 국제출원 절차요건을 통일·간소화한 국제조약임.

27)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해 1967년 체결, 1970년에 발효됨.

28) 마드리드 시스템은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부록 표 3. 지재산 관련 주요 조약 가입연도

| 지재산 관련<br>조약가입 여부 | 세계지적재<br>산권기구(WI<br>PO) | 파리협약   | 특허협력<br>조약(PCT) | 특허법조<br>약(PLT) | 상표법<br>조약(TLT) | 마드리드<br>의정서     | 베른협약  |
|-------------------|-------------------------|--------|-----------------|----------------|----------------|-----------------|-------|
| 브루나이              | 1994년                   | 2011년  | 2012년           | -              | -              | 2016년           | 2006년 |
| 캄보디아              | 1995년                   | 1998년  | 2016년           | -              | -              | 2015년           | -     |
| 인도네시아             | 1979년                   | 1950년  | 1997년           | -              | 1997년          | -               | 1997년 |
| 라오스               | 1994년                   | 1998년  | 2006년           | -              | -              | 2015년           | 2011년 |
| 말레이시아             | 1988년                   | 1988년  | 2006년           | -              | -              | -               | 1990년 |
| 미얀마               | 2001년                   | -      | -               | -              | -              | -               | -     |
| 필리핀               | 1980년                   | 1965년  | 2001년           | -              | -              | 2012년           | 1950년 |
| 싱가포르              | 1990년                   | 1994년  | 1994년           | -              | -              | 2000년           | 1998년 |
| 태국                | 1989년                   | 2008년  | 2009년           | -              | -              | -               | 1931년 |
| 베트남               | 1981년                   | 1949년* | 1992년           | -              | -              | 2006년<br>(1956) | 2004년 |
| 인도                | 1975년                   | 1998년  | 1998년           | -              | -              | 2013년           | 1928년 |
| 중국                | 1980년                   | 1984년  | 1993년           | -              | 1994년**        | 1995년<br>(1989) | 1992년 |
| 일본                | 1975년                   | 1899년  | 1978년           | 2016년          | 1997년          | 1999년           | 1899년 |
| 한국                | 1978년                   | 1980년  | 1984년           | -              | 2002년          | 2003년           | 1996년 |

주: 1) \* 발효연도, \*\* 서명연도를 의미.

2) 괄호 안의 숫자는 마드리드 협정 가입 연도.

자료: WIPO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검색일: 2017. 1. 5).